
담당관실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기획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기여자 국외연수] [P - 3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2월 ~ 2019. 11월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군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확보로 실적 향상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77,857	92,857	185,000	-	-	185,000	92,143		
도 비	277,857	92,857	185,000	-	-	185,000	92,143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2조, 제25조
근거내용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정업무,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기타 보상 등) 시장은 자발적인 시정업무 참여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정 발전에 관한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 상사업비 내시 (2018.11.30.)
-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기여자 국외연수 실시로 인센티브 제공
- 지표 담당자에게 확실한 동기 부여로 평가 지표 업무 기피 사례 방지
- ※ 도비보조금 교부 조건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목적 사업에만 사용 가능
(실적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적 성격의 경비 포함)
 -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 보조금 사용 불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	185,000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기여자 국외연수	202-04 국제화여비	.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기여자 국외연수 : 3,700,000원 × 50명 = 185,000,000원	= 18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30. :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통보 (경기도)
- 2018.12.14. : 우수 시군 상사업비 자금 교부 예정
- 2018.12.21. :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기여자 국외연수 계획 수립
- 2019.1 ~ 2 : 실적 향상 기여자 국외연수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2016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 2그룹 9위 , 31개 시군 중 28위	
2017년	· 2017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 2그룹 8위 , 31개 시군 중 28위 - 전년도 하위 시군 목표달성 인센티브 42,857천원 확보	
2018년	· 2018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 2그룹 4위, 31개 시군 중 10위 - 장려상 인센티브 150,000천원 - 전년도 하위 시군 목표달성 인센티브 35,000천원 확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7년	92,857	49,440	42,857	560	42,857천원은 12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내시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018년	42,857	39,483	0	3,374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획담당관	성과관리팀장 이금미	담당자	행정7급 오나윤	전화	2592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주민협치담당관



[마을기업 육성사업(판로지원) P - 3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5,000	10,000			5,000		
국 비		2,500	5,000			2,500		
도 비								
시 비		2,500	5,000			2,5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침
근거내용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마을기업 판로, 홍보지원 사업 추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마을기업 발굴 육성(판로지원) 사업
 - 제품포장재(박스) 및 홍보물(팜플릿) 제작 지원을 통한 마을기업 활성화 도모
- 경기도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판로지원) 추진[도 따복공동체지원과-8909(2018.09.18.)]
 - ※ 경기도에서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비 잔액을 마을기업 판로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마을기업 발굴육성 (판로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품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2개소) - 박 스 : 1,375원 × 3,636개(엘리트농부) = 5,000 - 팸플릿 : 1,375원 × 1,818장(과수원길협동조합) = 2,500 - 박 스 : 2,750원 × 919장 = 2,500	

□ 최근 2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2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7년	· 마을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부(주) : 쌀포장재 제작(2,500개) - 과수원길협동조합 : 부직포가방 제작(3,753개)	
2018년	-	

○ 최근2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7년	5,000	5,000	-	-	
2018년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민협치담당관	사회적경제팀장 김태우	담당자	행정7급 이정희	전화	2746
-----	---------	-------------	-----	----------	----	------

행정국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행정과



((재)김포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P - 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2.
- 사업규모 : 관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225,000	225,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225,000	225,000		225,000	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재정지원)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근거법령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근거내용	①시장은 금고가 시와의 약정에 따른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근거내용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자체■	보조□	-	-	-	-	-	-	2018.12. 예정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학금 지급액 및 수혜대상 증가에 기여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우선 선발 지원
-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 및 단체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	306-01 출연금	·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 = 225,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향후계획

- 2018.12. :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 지급	
2017년	-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 지급	
2018년	-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25,000	325,000	-	-	
2017년	225,000	225,000	-	-	
2018년	225,000	225,0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행정과	사무후생팀장 이혜진	담당자	행정7급 강민정	전화	2035
-----	-----	------------	-----	----------	----	------

[공무원 교육훈련] [P -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연중
- 사업규모 : 공무원 정원 1,17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능동적 변화관리를 주도하는 스마트한 인재 양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120,250	150,950	148,950		2,000	30,700	
국 비								
도 비								
시 비		120,250	150,950	148,950		2,000	30,7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4조
근거내용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김포시 공무원 정원(993명)에 비례하여 예산 수립하였으나 정원증원 및 교육 파견명령자가 예상외로 추가 발생
 - 2018.9월 기준 정원 : 1177명
 - 5급 승진자 및 신규공직자 등 장기교육자 증가
- 2018년 11월·12월 교육기관(경기도인재개발원) 입교대상자의 중식비 사후 정산금 지급 예정에 따라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무원 교육훈련	202-05 공무원교육여비	· 국내교육여비 : 4,000원 x 50명 x 10일 = 2,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공무원 교육여비 -경기도인재개발원, 각 부처 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 교육파견명령 대상자 : 133,799,000원	
2017년	○공무원 교육여비 -경기도인재개발원, 각 부처 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 교육파견명령 대상자 : 110,023,700원	
2018년	○공무원 교육여비 -경기도인재개발원, 각 부처 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 교육파견명령 대상자 : 145,214,500원(예산집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35,280	133,799	0	1,481	
2017년	120,250	110,023	0	10,227	
2018년	148,950	145,214	0	예산집행중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행정과	인사팀장 이경희	담당자	행정8급 정미연	전화	2105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교육지원과



[진로체험 교실 사업] [P - 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2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진로체험교실사업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		146,000	△146,000		
국 비								
도 비					73,000	△7,300		
시 비			-		73,000	△7,3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진로교육법	제18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진로체험교실 사업 미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진로체험 교실사업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진로체험교실 운영비 삭감 = Δ6,0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진로체험교실 설치비 삭감 = Δ14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담당자	행정7급 이상원	전화	2579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고촌중학교 체육관 및 수영장 복합시설 신축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체육관 및 수영장신축 공사비 * 50% = 2,430,000	국비 3,000,000천원을 제외한 공사비 4,860,000천원 교육청 대응지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04. : 고촌중학교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대상사업 선정(국비 30억)
- 2018.11.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01. ~ 2020.01.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20.02. ~ 2021.02. : 공사
- 2021.03. : 준공 및 개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담당자	행정7급 조세영	전화	2568
-----	-------	------------	-----	----------	----	------

[마산서초등학교 복합시설(체육관) 신축 사업] [P - 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9. ~ 2020. 09. ○ 위 치 : 구래동 6891-10
- 사업규모 : 1,143,000천원[지상1층 주차장·필로티(1,127㎡), 지상2층 체육관(1,127㎡)]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세먼지,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체육활동 보장과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체육관 신축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1,143,000			1,143,000		
국 비								
도 비								
시 비			1,143,000			1,143,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대 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2018.11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칭)마산서초등학교는 2020년 9월 개교예정 학교로, 돌봄교실 3실 설치 및 시설 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의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되었음.
- 학교신설 조건부 의결사항인 「시설 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으로 김포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복합시설(체육관) 총 사업비 중 30%를 지원하는 것임.
-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가칭)마산서초등학교 복합시설(체육관) 신축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체육관 신축비 * 30% = 1,14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4. :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가칭)마산서초 학교신설 조건부 통과
- 2018.09. : 설계공모 의뢰
- 2019.09. ~ 2020.09. : 공사 착공 및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담당자	행정7급 조세영	전화	2568
-----	-------	------------	-----	----------	----	------

[유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 (P - 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5. ~ 2020. 12. ○ 위 치 : 유현로 33번길 50
- 사업규모 : 379,800천원 [지상2층 체육관(923㎡)] ※ 지상1층 식당은 교육청에서 사업 시행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상악화 시 체육활동이 불가하고 각종 행사 시 강당 시설이 없어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체육관 신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에 기여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79,800			379,800		
국 비								
도 비								
시 비			379,800			379,8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대 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2018.11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현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우천시에 실내 체육활동, 졸업식 등 각종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타 학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또한 19년 1월 통학구역 내 1,070세대 아파트 입주예정므로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신축이 시급함.
- 항공기 소음피해 인근지역으로 수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였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유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체육관 신축비 * 50% = 379,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5. ~ 2019.02.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20.03. ~ 2020.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담당자	행정7급 조세영	전화	2568
-----	-------	------------	-----	----------	----	------

[마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 (P - 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1. ~ 2020. 06. ○ 위 치 : 통진읍 흥신로 315
- 사업규모 : 319,650천원 [지상1층 식당(730㎡), 지상2층 체육관(73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체육활동 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학부모 민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19,650			319,650		
국 비								
도 비								
시 비			319,650			319,65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대 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2018.11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마송초는 체육관이 없어 우천 시 실내체육활동 및 각종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인근 마송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신축 예정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함.
- 다목적 활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마송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체육관 신축비 * 50% = 319,6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2019.09. : 설계 용역 실시
- 2019.10. ~ 2020.06. :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최명순	담당자	행정7급 조세영	전화	2568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회계과



[시청사 노후 천장재 교체공사] (P - 3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5. ~ 2019. 5.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본관동
- 사업규모 : 본관동 석면 천장재 등 교체면적 A=1,768.2㎡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 석면 천장재 교체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470,000		470,000	470,000		0	470,000		
국 비									
도 비									
시 비	470,000		470,000	470,000		0	470,000		
기 타									

주) 1. 기타는 비교란에 지방채, 자부담 등으로 재원 표기,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총사업비와 향후투자 미입력(공란처리)
 2. 입력란 (A)는 공사등 1회성 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투입된 기투자 예산액을 기입하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2017년 예산만을 입력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근거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사업성격

- 경상 : 목그룹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용자 및 출자(500), 보전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 자본 : 목그룹 자본지출(400)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청사 석면조사용역('14. 1월) 결과, 시청사 사무실 및 기계실 등의 천장재에 석면함유 의심물질이 일부 검출됨에 따라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을 위하여 교체 필요
- 시청사 노후 천장재 교체공사 감리를 위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분리하여 예산 편성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 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은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청사 노후 천장재 교체공사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용역비 : 20,000,000원 = 20,000 · 건축공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비 : 428,500,000원 = 428,5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21,500,000원 = 21,5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8 예산액				이월 요구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470,000		470,000	470,000			45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0		
	보상비								
	공사비	428,500		428,500	428,500		428,500		
	감리비	21,500		21,500	21,500		21,50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5.08. ~ 07.06 : 실시설계용역 완료(용역비: 20,000천원 집행)
- 2018.1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18.12. ~ 2019.05. :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해당없음	
2017년	해당없음	
2018년	시청사 노후 석면 천장재 등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	-	-	-	
2017년	-	-	-	-	
2018년	470,000	19,653	450,000	347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종관	담당자	시설7급 손정재	전화	2735
-----	-----	------------	-----	----------	----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8 예산액				이월 요구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2월 ~ 2019. 1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 2월 ~ 2019. 3월 :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김종관	담당자	시설9급 유기주	전화	2736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정보통신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북부권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401-01 시설비	북부권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 = 300,000 20,000,000원*15개소 [국 3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8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2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300,000		300,000			300,000		
공정별 공사비	300,000		300,000			30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2 : (자체)설계 및 행정예고
- 2019.0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19.02 : 입찰공고 및 착공
- 2019.06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	
현장사진 (칼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보통신과	영상정보팀장 박종대	담당자	방송통신7급 문원중	전화	5612
-----	-------	------------	-----	------------	----	------

경 제 국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P - 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단기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00,000	107,000	100,000		7,000	7,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	107,000	100,000		7,000	7,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내 융자 시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18년 3분기까지 지원액 : **76,055천원** (2014년부터 대출실행중인 186개 업체 이자보전)
 - '18년 4분기 이자차액 보전금 예상액 : 30,900천원
- 자연재난 및 금리인상으로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307-08 이자보전금	.보전금 : 107,000,000원 = 107,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7.11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개최-2018년 지원계획 심의(11. 28.)
- 2017.12 : 2018년 대출 취급은행 협약 체결(8개은행) 및 '18년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 2018.01~2018.12 : 소상공인 운전자금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결정 : 34건 1,365백만원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 88,765천원	
2017년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결정 : 95건 3,435백만원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 88,663천원	
2018년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결정 : 53건 1,890백만원(11. 23. 현재)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3분기까지) : 76,055천원 ※ 4분기 보전금 예산 부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50,000	88,765	-	61,235	
2017년	100,000	88,663	-	11,337	
2018년	107,000	107,0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권	담당자	행정7급 김지영	전화	2563
-----	--------	------------	-----	----------	----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19 5일장 상인회 면담 시 상인회에서 공중화장실 동파방지 조치 및 시설 보완 요청 건의
- 2018.11. 현장 점검 및 김포5일장 공중화장실 정비계획 수립
- 2018.12. 화장실 보수 작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김포5일장 공중화장실 설치 : 138백만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15년 3회 추경 명시이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최중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50,000	137,539	-	12,46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권	담당자	행정7급 임지숙	전화	2564
-----	--------	------------	-----	----------	----	------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조성] [P - 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2월~2019년 6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년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233,660			233,660		
국 비								
도 비								
시 비			233,660			233,66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근거내용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2018.10.30.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창업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 중앙·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실업 위기 대응
- 취업지원공간, 창업지원공간, 휴게공간 등의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리시 청년 취·창업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조성		합 계	233,660	
		소 계	20,400	
	201-01 사무관리비	. 임대료 : 12,000,000원	= 12,000	
		. 관리비 : 2,400,000원	= 2,400	
		. 사무운영비 : 6,000,000원	= 6,000	
		소 계	6,000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통신 등) : 2,000,000원	= 2,000	
		. 싸인물 설치 및 시설관리비 : 4,000,000원	= 4,000	
	401-01	소 계	120,000	

	시설비	. 설계비 : 20,000,000원*1개소 = 20,000 . 공사비 : 100,000,000원*1개소 = 100,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 계 17,260	
. 냉난방기 : 4,500,000원*2대 = 9,000			
. 비디오프로젝터 : 2,500,000원*1대 = 2,500			
. 냉장고 : 660,000원*1대 = 660			
. 전자레인지 : 100,000원*1대 = 100			
406 기타자본이전	. 의자 및 책상 제작구매 : 5,000,000원 = 5,000		
	소 계 70,000		
		. 보증금 : 70,000,000원*1개소 = 7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8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2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20,000		120,000			12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공사비	100,000	100,000			10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20. : 김포 청년공간 조성 계획 수립
- 2018. 10.30. :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18. 12월 : 예산확보(4회추경)
- 2018. 12월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 2019. 1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19. 2월~5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 팀장 김정애	담당자	행정6급 남혜진	전화	2275
-----	--------	--------------	-----	----------	----	------

복 씨 국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복지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P - 4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6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4,000	44,000	24,000	18,000	2,000	20,000		
국 비									
도 비		4,800	8,800	4,800	2,000	2,000	4,000		
시 비		19,200	35,200	19,200	16,000	0	16,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제4호
근거내용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나라사랑 고취
-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경기도 복지정책과-29590(2018.11.15.))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비 6,000천원 자체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및 구료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2,000,000원	= 2,000 도비 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약제비 및 진료비 청구 접수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 36가구 22,440천원	
2017년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 39가구 24,000천원	
2018년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 43가구 38,032천원	'18.11월 현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4,000	22,440	-	1,560	
2017년	24,000	24,000	-	-	
2018년	44,000	44,0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P - 4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1기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 별초비 및 안내판 설치비 지원을 통한 독립유공자 예우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400	1,400		△300	1,100		
국 비									
도 비			1,400	1,400		△300	1,100		
시 비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2호
근거내용	1. 도내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별초비 및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
-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경기도 복지정책과-28210(2018.11.1.))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301-11 기타보상금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 별초비 : 200,000원×1기 - 안내판 : 900,000원×1기 = 1,100	도비 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월 :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 지급 및 안내판 설치(독립유공자 신관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 및 안내판 설치비 지원 : 1기(독립유공자 신관수) 1,1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8년	1,100	1,1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생계급여] [P - 4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819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18,574,418	18,786,910	18,623,879	1,522,360	△1,359,329	212,492	
국 비		14,859,534	15,029,528	14,899,103	1,217,888	△1,087,463	169,994	80%
도 비		1,857,442	1,878,691	1,862,388	152,236	△135,933	21,249	10%
시 비		1,857,442	1,878,691	1,862,388	152,236	△135,933	21,249	1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근거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 ※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2018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고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급대상 : 국민기초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사업량 : 3,819가구 - 지급내용 생계급여 : 409,950원×3,819가구×12월 = 18,786,9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 매월 : 읍면동 생계급여 대상자 신규책정 및 변동 확인
- 매월 : 생계급여 지급(매월 20일 정기급여, 매월 말일 추가급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생계급여 지급 : 4,292가구 16,795,810천원 지급	
2017년	○ 생계급여 지급 : 4,326가구 16,795,810천원 지급	
2018년	○ 생계급여 지급 : 4,472가구 15,461,476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6,844,065	16,795,810	-	48,255	
2017년	18,574,418	18,229,055	-	345,363	
2018년	18,786,910	18,751,218	-	35,69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7급 이의혜	전화	2621
-----	-----	------------	-----	----------	----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P - 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31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동시에 빈곤의 세대 대물림을 예방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62,636	59,430	77,088		△17,658	△3,206		
국 비								80%	
도 비								6%	
시 비		62,636	59,430	77,088		△17,658	△3,206	14%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1항
근거내용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가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되어 교육부로 업무 이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지급대상 : 시교육청(국민기초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 사 업 량 : 1,316명 - 지급내용 ▶ 초등학교 : 부교재비 ▶ 중 학 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교 :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59,430 (시비 부담금 14%)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 2018.11 하반기 시비보조금 이체(시 → 경기도교육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교육급여 - 사업량 : 1,697명 - 지원내역 ▶ 초·중학생 : 부교재비(1명당 39,2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1명당 53,3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1명당 131,3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 학교로 지급	
2017년	○ 교육급여 - 사업량 : 1,405명 - 지원내역 ▶ 초·중학생 : 부교재비(1명당 41,2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1명당 54,1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 학교로 지급	
2018년	○ 교육급여 - 사업량 : 1,316명 - 지원내역 ▶ 초·중학생 : 부교재비(초-1명당 66,000원, 중-1명당 105,0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초-1명당 50,000원, 중-1명당 57,000원) - 수급자 현금 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 학교로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70,180	70,180	-	-	
2017년	62,636	62,636	-	-	
2018년	59,430	59,43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7급 이의혜	전화	2621
-----	-----	------------	-----	----------	----	------

[해산장제급여] [P - 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8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25,373	134,338	134,101	5,339	△5,102	8,965		
국 비		100,299	107,471	107,281	4,271	△4,081	7,172	80%	
도 비		7,522	8,060	8,046	320	△306	538	6%	
시 비		17,552	18,807	18,774	748	△715	1,255	14%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근거내용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것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 내시 통보[경기도 복지정책과-25211(2018.10.08.)]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시 60만원 및 사망 시 75만원의 정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 고
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급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해산자 및 사망자 · 사 업 량 : 181명 · 지급내용 - 해산자 : 600,000원×10명 - 사망자 : 750,000원×171명	= 134,33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 국도비 보조금 감액내시 통보
- 수시 : 해산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해산급여 : 8명 4,800천원 ○ 장제급여 : 128명 95,566천원	
2017년	○ 해산급여 : 8명 4,800천원 ○ 장제급여 : 156명 116,863천원	
2018년	○ 해산급여 : 7명 4,200천원 ○ 장제급여 : 139명 104,2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01,434	100,366	-	1,068	
2017년	125,373	121,663	-	3,710	
2018년	139,440	108,450	-	8,49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사회복지9급 양현주	전화	2624
-----	-----	------------	-----	------------	----	------

[양곡할인] (P - 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6,815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98,012	370,812	237,286	108,730	24,796	72,800		
국 비		298,012	370,812	237,286	108,730	24,796	72,800	100%	
도 비									
시 비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근거내용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급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에게 9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2018년도 지원단가

구분	양곡대금			택배비	비고
	계	본인부담	예산지원		
20Kg	32,710원	3,200원	29,510원	2,900원	
10Kg	16,540원	1,600원	14,940원	2,500원	

- 지원방법 : 택배를 통한 각 가정 배송 (희망나르미와 계약)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370,812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지급대상 : 희망나르미 - 사업량 : 16,815포 - 지급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10kg) : 2,500원 × 11,640포 ▶ 정부양곡 택배비(20kg) : 2,900원 × 5,175포	= 44,200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구입희망자 - 사업량 : 16,815포 - 지급내용 ▶ 정부양곡 지원금(10kg) : 14,940원 × 11,640포 ▶ 정부양곡 지원금(20kg) : 29,510원 × 5,175포	= 326,61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 매월 : 읍면동 정부양곡 신청대상자 신청 및 접수
- 매월 : 정부양곡 주문 및 배송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양곡할인(수급자) - 사업량 : 7,257가구 7,538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	
2017년	○ 양곡할인(수급자) - 사업량 : 10,236가구 10,867포[10kg - 2,245포, 20kg - 8,622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	
2018년	○ 양곡할인(수급자) - 사업량 : 15,410가구 16,872포[10kg - 11,758포, 20kg - 5,114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80,000	174,491	-	5,509	
2017년	298,012	276,921	-	21,091	
2018년	370,812	370,805	-	7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7급 이의혜	전화	2621
-----	-----	------------	-----	----------	----	------

[양곡할인(차상위계층)] (P - 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량 : 2,655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4,770	38,425	27,099	18,106	△6,780	13,655		
국 비		19,816	30,739	21,679	14,485	△5,425	10,923	80%	
도 비		743	1,153	813	543	△203	410	3%	
시 비		4,211	6,533	4,607	3,078	△1,152	2,322	17%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근거내용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10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18년도 지원단가

구분	양곡대금			택배비	비고
	계	본인부담	예산지원		
20Kg	32,720원	16,300원	16,420원	2,900원	
10Kg	16,540원	8,200원	8,340원	2,500원	

- 지원방법 : 택배를 통한 각 가정 배송 (희망나르미와 계약)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38,425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지급대상 : 희망나르미 - 사업량 : 2,655포 - 지급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10kg) : 2,500원 × 1,515포 ▶ 정부양곡 택배비(20kg) : 2,900원 × 1,140포	7,090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희망자 - 사업량 : 1,815포 - 지급내용 ▶ 정부양곡 지원금(10kg) : 8,340원 × 980포 ▶ 정부양곡 지원금(20kg) : 16,420원 × 835포	31,33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 매월 : 읍면동 정부양곡 신청대상자 신청 및 접수
- 매월 : 정부양곡 주문 및 배송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양곡할인(차상위) - 사업량 : 1,069가구 1,276포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대상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	
2017년	○ 양곡할인(차상위) - 사업량 : 1,350가구 1,625포[10kg - 416포, 20kg - 1,209포]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대상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	
2018년	○ 양곡할인(차상위) - 사업량 : 1,974가구 2,513포[10kg - 1,381포, 20kg - 1,132포]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대상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2,540	29,230	-	3,310	
2017년	24,770	24,455	-	315	
2018년	38,425	36,851	-	1,574	종말 감액내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7급 이의혜	전화	2621
-----	-----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P - 1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6,21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전용차량 유지비, 여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급여업무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22,687	20,500	22,000		△1,500	△2,187	
국 비		13,800	14,400	15,600		△1,200	600	
도 비		3,296	2,520	2,730		△210	△776	
시 비		5,591	3,580	3,670		△90	△2,011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3호
근거내용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홍보물제작,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전용차량 유지비, 업무추진 관련 여비 등 행정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 ※ 전용차량 유지비 2,500천원(시비 100%) -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는 전액 시군 부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20,500	
의료급여 자체단체경상보 조(행정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 ·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 5,000,000원 = 5,000 · 사무관리비 : 5,080,000원 = 5,080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202-01 국내여비	- 의료급여사업 추진 · 출장여비 : 220,000원×3명×12월 = 7,920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의료급여사업 전용차량 유지비 · 자동차세 : 80,000원 = 80 · 점검 및 수리비 : 500,000원 = 500 · 유류비 : 160,000원×12월 = 1,920	시비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수시 : 인쇄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차량 유지 및 유류비 지급
- 매월 :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 : 5,021천원 - 출장여비 : 6,984천원 - 의료급여사업 전용차량 유지비 : 916천원	
2017년	-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 : 12,250천원 - 출장여비 : 6,181천원 - 의료급여사업 전용차량 유지비 : 1,619천원	
2018년	-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 : 6,652천원 - 출장여비 : 4,747천원 - 의료급여사업 전용차량 유지비 : 1,4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5,000	12,921		2,079	
2017년	22,687	20,050		2,637	
2018년	20,500	12,866		2,6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8급 김애경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P - 1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6,21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 보장구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향상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10,000	385,000	310,000	33,000	42,000	75,000	
국 비		248,000	308,000	248,000	26,400	33,600	60,000	
도 비		43,400	53,900	43,400	4,620	5,880	10,500	
시 비		18,600	23,100	18,600	1,980	2,520	4,5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근거내용	제19조의2(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①수급권자는 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구입 비용지원을 통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의료복지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385,000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 요양비 지원 : 200,000원×450건 · 보장구 지원 : 1,200,000원×150건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31,000원×3,000명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50,000원×260건 · 본인부담보상금 : 15,000원×600건	= 90,000 = 180,000 = 93,000 = 13,000 = 9,000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분기별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정산 지급
- 반기별 :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 수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및 접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요양비 지원 : 234건, 53,996천원 . 보장구 지원 : 117건, 117,784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2,076건, 80,926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44건, 3,522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7건, 1,657천원	
2017년	. 요양비 지원 : 347건, 80,361천원 . 보장구 지원 : 119건, 109,043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2,993건, 95,262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227건, 13,160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843건, 11,110천원	
2018년	. 요양비 지원 : 370건, 75,971천원 . 보장구 지원 : 140건, 135,219천원 . 건강생활유지비잔액 : 3,215건, 92,180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210건, 12,169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630건, 8,54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09,322	257,885		51,437	
2017년	310,000	308,936		1,064	
2018년	385,000	324,083		1,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8급 김애경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P - 1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및 관외 의료기관
- 사업규모 : 6,21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1,538,421	1,818,840	1,700,090	119,863	△1,113	280,419	
국 비								
도 비								
시 비		1,538,421	1,818,840	1,700,090	119,863	△1,113	280,419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0조, 제27조제1항
근거내용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단위 : 천원)

예산액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비고
30,314,000	24,251,200	4,243,960	1,818,840	

- 사업내용
 -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 시 급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충당 등을 위하여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 진료비 대상 : 6,214명 = 1,818,840	시비6% 부담분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18년 1월,6월,10월 :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납부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김포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차:539,936천원 2차:807,706천원 3차:59,522천원)	시군구→경기도 (경기도에서 일괄납부)
2017년	. 김포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차:1,115,601천원 2차:278,900천원 3차:143,920천원)	
2018년	. 김포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차:1,360,072천원 2차:230,000천원 3차:228,76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407,164	1,407,164		-	
2017년	1,538,421	1,538,421		-	
2018년	1,818,840	1,818,84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8급 김애경	전화	2622
-----	-----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인력운영비(무기계약직)] (P - 1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및 관외
- 사업규모 :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절감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	-	82,450	34,580	47,000	870	82,450	
국 비	-	-	65,960	27,664	37,600	696	65,960	
도 비	-	-	11,543	4,841	6,581	121	11,543	
시 비	-	-	4,947	2,075	2,819	53	4,947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5조의2제1항
근거내용	제5조의2(사례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올바른 의료이용 관행유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집중관리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무기계약직 3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계	= 82,450
의료급여 자체단체경상보조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기본급 : 2,075,800원×1명×12월+	= 61,746
		2,046,260원×2명×9월	
		. 4대보험: 494,000원×1명×12월+	= 14,820
494,000원×2명×9월			
. 퇴직급여충당금: 197,810원×1명×12월+	= 5,884		
194,990원×2명×9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매월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지급 - 2016년 3월부터 휴직 - 인건비 :4,890천원	
2017년	· 무기계약근로자 지급내역없음 - 2017년 휴직	
2018년	·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 2018년4월 무기계약근로자 2명 추가채용 - 인건비 :60,4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562	4,890		672	
2017년	0	-		-	
2018년	82,450	60,467		6,38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8급 김애경	전화	2622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아동청년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P - 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량 : 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077	0	8,022	△1,410	△6,612	△3,077	
국 비		2,154	0	5,615	△987	△4,628	△2,154	
도 비		138	0	361	△64	△297	△138	
시 비		785	0	2,046	△359	△1,687	△785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만18세 미만의 중·경증 장애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며, 장애입양아동 신청자가 없어 예산삭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627천원/월/인)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551천원/월/인)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육수당 : 551,000원 × 0명 × 12월 =	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18. 01. ~ 2018. 12. : 매월 20일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1명 지급	
2017년	0	
2018년	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7,491	4,959	0	2,532	
2017년	3,077	0	0	3,077	
2018년	6,612	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원태	전화	5426
-----	-------	----------	-----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P - 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4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25,000	257,400	234,000	18,000	5,400	32,400		
국 비		157,500	180,180	163,800	12,600	3,780	22,680		
도 비		10,125	11,583	10,530	810	243	1,458		
시 비		57,375	65,637	59,670	4,590	1,377	8,262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만16세가 될 때까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양육수당 : 150,000원 × 143명 × 12월 = 257,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18. 01. ~ 2018. 12. : 매월 20일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115명 지급	
2017년	135명 지급	
2018년	143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48,774	198,300	0	50,474	
2017년	225,000	223,950	0	1,050	
2018년	252,000	211,50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원태	전화	5426
-----	-------	----------	-----	------------	----	------

[아동수당 지급] (P - 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7,91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1,165,250	16,180,479	△5,565,279	550,050			
국 비			7,776,597	11,067,448	△3,689,884	399,033			
도 비			1,004,873	1,456,243	△500,875	49,505			
시 비			2,383,780	3,656,788	△1,374,520	101,512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근거내용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김포시 내에 사업규모 26,538명으로 금액 편성하였으나, 김포시 아동 증가율에 따라 경기도 아동청 소년과-24722(2018.11.28.)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100,000원 × 27,913명 × 4개월 = 11,165,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 ~ 2018. 12. : 매월 25일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9월 지급 아동 수 : 24,797명 10월 지급 아동 수 : 26,99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8년	11,165,250	5,404,75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이명원	전화	5530
-----	-------	----------	-----	----------	----	------

[결식아동 급식비] (P - 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0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500,000	493,333	500,000		△6,667	△6,667		
국 비									
도 비		150,000	148,000	150,000		△2,000	△2,000		
시 비		350,000	345,333	350,000		△4,667	△4,667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
근거내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타 시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과-20574(2018.09.21.)호에 따라 감액 내시 변경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의거 식사제공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여 복지의 질 향상
- 같은 법 제59조제1호 및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계			493,333
결식아동 급식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학기 및 방학중 : 6,000원×405명×203식	≒ 493,33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1. ~ 2018. 12. : 매월 급식카드 충전,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365명 지원	
2017년	367명 지원	
2018년	38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10,343	171,123	-	139,220	
2017년	500,000	376,991	-	123,009	
2018년	493,333	479,077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차지인	전화	5593
-----	-------	----------	-----	----------	----	------

[결식아동 급식비(토·일·공휴일)] (P - 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3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63,918	55,918	63,918		△8,000	△8,000	
국 비								
도 비		63,918	55,918	63,918		△8,000	△8,000	
시 비								
기 타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타 시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과-20574(2019.09.21.)호에 따라 감액 내시 변경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의거 식사제공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계			55,918
결식아동 급식비 (토·일·공휴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토 요 일 : 6,000원×130명×71식 =	55,9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1. ~ 2018. 12. : 매월 급식카드 충전,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100명 지원	
2017년	117명 지원	
2018년	12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0,000	13,729	-	36,271	
2017년	63,918	55,783	-	8,135	
2018년	55,918	10,976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차지인	전화	5593
-----	-------	----------	-----	----------	----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P - 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량 : 지역아동센터 16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우수지역아동센터의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 (E)			
계		37,872	36,280	37,942	778	△2,440	△1,592		
국 비		18,936	18,140	19,322	38	△1,220	△796		
도 비		2,840	2,721	2,844	60	△183	△119		
시 비		16,096	15,419	15,776	680	△1,037	△677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25401호(2018. 12. 3.)에 따른 변경 내시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추가 지원

-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시설별 월 1,200천원 ~ 3,64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 (1,200,000원~3,640,000원)*16개소 = 36,2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2. :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16개소 지급	2017년 신규사업
2018년	2018. 12월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7년	37,872	35,058	-	2,814	
2018년	36,28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무제도 지원] [P - 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량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1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마련 및 사기진작 기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급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651,304	775,338	660,794	110,000	4,544	124,034		
국 비		651,304	775,338	660,794	110,000	4,544	124,034		
도 비									
시 비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병역법	제31조 제5항
근거내용	제5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사회복무요원 중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150명)의 보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수요증가로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증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 급 : 368,190원*150명*12개월 = 662,742	
		.교통비 : 2,317원*150명*240일 = 83,412	
		.피복비 : 297,800원*98명 = 29,18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 2018. 12.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봉급, 교통비, 피복비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복무요원 봉급·교통비 지급	
2017년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복무요원(130명) 봉급·교통비 지급	
2018년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복무요원(150명) 봉급·교통비·피복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017년	651,304	651,304	0	0	
2018년	775,338	775,338	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9급 박세준	전화	2628
-----	--------	------------	-----	------------	----	------

[기초연금] (P - 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8,20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만65세 노인에게 연금지급으로 생계지원 및 노인 생활 안정 제고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54,681,307	65,427,422	66,316,637	△4,842,848	3,953,633	10,746,115		
국 비		38,276,915	45,799,195	46,421,646	△3,389,994	2,767,543	7,522,280		
도 비		3,280,878	3,925,646	3,978,998	△290,570	237,218	644,768		
시 비		13,123,514	15,702,581	15,915,993	△1,162,284	948,872	2,579,067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4조 1항, 제25조 1항
근거내용	<p>제4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조2항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빈곤문제 해결
- 김포시 인구 유입에 따른 수혜자 증가 및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지원 금액 상향으로 수혜 서비스 확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28,202명 = 65,427,422 - 단독가구 25,000원 ~ 250,000원 - 부부가구 50,000원 ~ 400,00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 ~ 2018.03. : 기초연금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18.01. ~ 2018.12. :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자 관리
- 2018.10.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27,541명에게 52,415,063천원 지급
- 2018.12. : 부족한 사업비 종말 추경반영 및 2018 기초연금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2016년 12월 기준 22,902명 48,841,631천원 지급	
2017년	- 2017년 12월 기준 25,736명 54,537,534천원 지급	
2018년	- 2018년 10월 기준 27,541명 52,415,063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48,916,033	48,841,631	0	74,402	
2017년	54,681,307	54,537,534	0	143,773	
2018년	61,473,789	52,415,063	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7급 한지혜	전화	2205
-----	--------	------------	-----	----------	----	------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P - 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량 : 1,23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300,000	309,500	340,000	0	△30,500	9,500		
국 비									
도 비		90,000	92,850	102,000	0	△9,150	2,850		
시 비		210,000	216,650	238,000	0	△21,350	6,65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1,360명→1,238명)로 예산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비 : 50,000원*1,238명*5월 = 309,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 ~ 2018. 12. : 사업집행(1~3월, 11월~12월 각 월 20일에 지급)
- 2018. 10. :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총 5,690명에게 월동난방비 지급(월 평균 1,138명)	
2017년	· 총 5,860명에게 월동난방비 지급(월 평균 1,172명)	
2018년	· 총 6,200명에게 월동난방비 지급 예정(월 평균 1,24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88,250	284,500	0	3,750	
2017년	300,000	293,000	0	7,000	
2018년	309,500	297,500	0	12,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9급 박세준	전화	2628
-----	--------	------------	-----	------------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 (P - 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취약 독거노인 발굴 현황조사 단기 인력 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독거노인에 대한 주기적 안전 확인 및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231,976	307,858	268,814	23,654	15,390	75,882	
국 비		162,389	220,120	188,182	16,548	15,390	57,731	
도 비		10,438	13,161	12,095	1,066	-	2,723	
시 비		59,149	74,577	68,537	6,040	-	15,428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약 독거노인 발굴 현황조사를 위한 단기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 : 월 850,000원*7명	= 11,900
		·운영비	= 3,49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 4대 보험 = 1,132 - 교통비 : 50,000원*7명 = 350 - 기관 운영비 : 1,000,000원*2개월 = 2,00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경기도 노인복지과-19984(2018.11.5.))
- 2018.11~2018.12: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 추진
- 2018.12~2019.01: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 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종사자 17명(서비스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16명)이 독거노인 425명 관리	
2017년	종사자 20명(서비스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19명)이 독거노인 480명 관리	
2018년	종사자 20명(서비스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19명)이 독거노인 500명 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01,509	201,421	0	88	
2017년	231,976	228,325	0	3,651	
2018년	292,468	292,468	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조승희	전화	2207
-----	--------	------------	-----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P - 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2
- 사업규모 : 대상자 9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273,129	276,458	320,581	△68,523	24,400	3,329	
국 비		191,190	193,530	224,407	△47,957	17,080	2,340	
도 비		12,291	12,439	14,426	△3,085	1,098	148	
시 비		69,648	70,489	81,748	△17,481	6,222	841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기요양등급의 A,B 판정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403-02 공관 등에 대한 자본적투자사업비	·사업비 : 242,507원*95명*12개월 = 276,45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경기도 노인복지과-19279(2018.10.24.))
- 2018.01~2018.12: 사업추진
- 2018.12~2019.01: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 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대상자 95명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2017년	대상자 90명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2018년	대상자 110명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16,491	208,080	0	8,411	
2017년	273,129	162,098	0	111,031	
2018년	252,058	252,058	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조승희	전화	2207
-----	--------	------------	-----	----------	----	------

※지원기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5년이상 16만원, 5년미만 12만원 (기초수급자가 총원의 30%~50%인 경우) -해당시설 정원77명중 27명 기초수급자로 수급자 비율35%)	계 520,500원/인/년 생일축하금 30,000원×1회 부식비추가 500원×365일 (182,500원/인/년) 명절위로비 128,000원/인/년 (피복비 80,000원, 급양비 48,000원) 난 방 비 1,000원(1일)×180일 (180,000원/인/년)
	환경개선비 5,000,000원×1회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8. 7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전 국비지원 법인 양로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전환에 따른 보조금 보존방안
- 2018.01~2018.12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및 정산(매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지급 및 정산(분기별)
- 2018.12.25. : 4차추경확보 후 미지급분 추가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2,879천원 기초수급 입소자 지원 : 13,020천원 환경개선비: 5,000천원	
2017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4,488천원 기초수급 입소자 지원 : 14,212천원 환경개선비: 5,000천원	
2018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3,960천원 기초수급 입소자 지원 : 12,967천원 환경개선비: 5,000천원	18.11.15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88,417	80,899	0	7,518	
2017년	88,417	73,700	0	14,716	
2018년	70,333	70,333	0	0	*부족분1,450천원 추가확보후 추가지급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조길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경인	전화	2215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 ~ 2018. 10.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20명,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18명 지원(10월기준)
- 2018.01. ~ 2018. 10. :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2,400천원 지급(10월기준)
- 2018.11. ~ 2018.12. : 추경예산 편성 및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급(12월 기준 44명) 65,082천원	
2017년	-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급(12월 기준 45명) 69,783천원	
2018년	-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급(10월 기준 38명) 52,4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68,400	65,082		3,318	
2017년	72,000	69,783		2,217	
2018년	74,400	52,400		5,7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7급 한지혜	전화	2205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P - 5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가연마을(월곶면 용강로 37번길 76-25)
예지원(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란치스꼬집(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소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유지와 보호 및 재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3,124,381	3,452,234	2,958,756	326,975	166,503	327,853		
국 비		2,187,068	2,416,564	2,071,129	228,883	116,552	229,496		
도 비		140,597	155,350	133,144	14,714	7,492	14,753		
시 비		796,716	880,320	754,483	83,378	42,459	83,604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307-10	·가연마을 종사자 인건비 43명*12개월 = 1,856,274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운영(3개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가연마을 관리운영비 = 91,162 ·예지원 종사자 인건비 29명*12개월 = 1,076,632 ·예지원 관리운영비 = 79,840 ·통진프랜치스꼬집 종사자 인건비 6명*12개월 = 314,004 ·통진프랜치스꼬집 관리운영비 = 34,32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18.01~2018.12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집행 및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가연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17년	가연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18년	가연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834,588	2,749,865		84,723	
2017년	3,124,381	2,945,432		178,949	
2018년	3,452,234	3,103,980			12월 인건비 집행 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신	전화	2211
-----	--------	------------	-----	------------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P - 5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72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연금 지원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637,868	4,328,282	4,367,837	△214,189	174,634	690,414	
국 비		2,546,508	3,029,798	3,057,486	△149,932	122,244	483,290	
도 비		218,272	259,697	262,070	△12,851	10,478	41,425	
시 비		873,088	1,038,787	1,048,281	△51,406	41,912	165,699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21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청자 증가(1,780명) 및 장애인연금 급여액 증가(206,050원 → 250,000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
- 기본급여 : 최고 250,000원 / 부가급여 : 최고 80,000원
- 12월 급여지급을 위해 추가편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8,110원*1,780명 = 174,63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8 ~ 2018.12 : 결과 평가 및 사업집행
 - 2018.11. : 성립 전 예산 계획 편성
 - 2019.01 : 결과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연 수급인원 : 18,526명	
2017년	연 수급인원 : 20,219명	
2018년	연 수급인원 : 19,7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630,717	3,566,138		64,579	
2017년	3,965,384	3,902,291		63,093	
2018년	4,153,648	4,153,648		-	11월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2
-----	--------	------------	-----	----------	----	------

[장애수당(기초) 지급] [P - 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00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465,871	457,556	467,576	0	△10,020	△1,301		
국 비		326,110	320,289	327,303	0	△7,014	1,193		
도 비		20,964	20,590	21,041	0	△451	△374		
시 비		118,797	116,677	119,232	0	△2,555	△2,12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21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
- 수당 : 1인 4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장애수당(기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40,000원*250명	= △10,0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8~2018.10 : 결과 평가 및 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차년도 예산 추계
- 2018.12 : 사업집행(매월 수당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19.1. : 결과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연 수급인원 : 10,174명	
2017년	연 수급인원 : 10,774명	
2018년	연 수급인원 : 10,07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450,565	438,460		12,105	
2017년	474,840	448,280		26,560	
2018년	467,576	467,576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2
-----	--------	------------	-----	----------	----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P - 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56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차상위 등) 경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675,080	337,540	410,428	391,761	0	18,667	72,888		
국 비	472,556	236,278	287,300	274,233	0	13,067	51,022		
도 비	30,378	15,189	18,469	17,629	0	840	3,280		
시 비	172,146	86,073	104,659	99,899	0	4,760	18,586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근거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청자 증가에 따른 장애수당 사업비 증가
- 중증장애아동 : 200,000원 / 경증장애아동 : 100,000원
차상위계층 : 40,000원 / 시설연 수급인원 : 2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원*466명 = 18.66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8 ~ 2018.12 : 사업집행
 - 2018.11. : 성립 전 예산 계획 편성
 - 2019.01 : 결과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연 수급인원 : 6,220명	
2017년	연 수급인원 : 6,845명	
2018년	연 수급인원 : 6,88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56,424	351,730		4,694	
2017년	407,617	370,924		36,693	
2018년	391,761	391,761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2
-----	--------	------------	-----	----------	----	------

[도비 장애수당] [P - 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7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도모를 위해 수당 지원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42,485	235,250	217,980	12,946	4,324	△7,235		
국 비							0		
도 비		48,497	47,050	45,925	1,125	0	△1,447		
시 비		193,988	188,200	172,055	11,821	4,324	△5,788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근거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 중복 수급자(장애1·2급, 중복3급)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
- 수당 : 1인 4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도비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원*108명	= 4,32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8 ~ 2018.12 : 사업집행
 - 2018.12 : 사업집행 (대행사업비 지급 및 지원현황 모니터링)
 - 2019.01 : 결과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연 수급인원 : 5,756명	
2017년	연 수급인원 : 5,901명	
2018년	연 수급인원 : 5,29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42,485	235,960		6,525	
2017년	238,050	234,730		3,320	
2018년	230,926	230,926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2
-----	--------	------------	-----	----------	----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P - 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5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하절기와 동절기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비용의 일부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56,020	167,610	159,100	2,510	6,000	11,590		
국 비									
도 비		31,204	33,522	31,820	502	1,200	2,318		
시 비		124,816	134,088	127,280	2,008	4,800	9,272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가구에 냉방비(7,8,9월)·난방비(11,12,1,2월)를 지원해 중증장애인 경제부담 완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
-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0원*120명(추가)*1월 = 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2 : 12월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1월(375가구) = 19,100 2월(367가구) = 18,350 3월(376가구) = 18,850 11월(426가구) = 21,300 12월(404가구) = 37,000 (환수 -3,540)	상계 지급 대상자도 포함
2017년	1월(417가구) = 21,100 2월(407가구) = 20,550 3월(414가구) = 21,000 7월(421가구) = 16,840 8월(406가구) = 16,760 9월(446가구) = 20,760 11월(403가구) = 20,150 12월(392가구) = 19,900 (환수 -1,080)	
2018년	1월(431가구) = 24,560 2월(440가구) = 22,150 3월(433가구) = 22,000 7월(456가구) = 18,240 8월(427가구) = 17,080 9월(439가구) = 18,2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00,300	94,050		2,750	
2017년	156,020	155,980		40	
2018년	161,610	122,23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사회복지9급 황윤정	전화	2218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P - 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964,119	5,735,410	4,459,029	87,567	1,188,814	1,771,291	
국 비		2,774,883	4,013,787	3,121,321	61,296	831,170	1,238,904	
도 비		178,386	258,094	200,656	3,941	53,497	79,708	
시 비		1,010,850	1,463,529	1,137,052	22,330	304,147	452,679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이용신청자 증가로 활동지원 사업비 부족분 발생
- 변경내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0,760원*90시간*400명*3월 = 1,188,81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성립전예산 편성
 - 2018.12 : 예산집행 및 결과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이용자 : 305명	
2017년	이용자 : 365명	
2018년	이용자 : 39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844,672	2,844,586		86	
2017년	3,964,119	3,964,119		-	
2018년	4,546,596	4,546,596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2
-----	--------	------------	-----	----------	----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바우처)] (P - 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1,026	15,196	9,631	0	5,565	4,170		
국 비		7,692	10,638	6,742	0	3,896	2,946		
도 비		496	683	433	0	250	187		
시 비		2,838	3,875	2,456	0	1,419	1,037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종증(인정점수 440점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자동으로 가산수당 추가 지급
- 변경내시 반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바우처)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 7,730원*12명*5개월(8~12월) = 5,56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8 ~ 2018.12 : 차년도 예산 추계 및 사업집행 및 결과 평가
- 2018.11. : 성립 전 예산 계획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용자 : 12명 제공인력 : 2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9,113	9,113		-	
2017년	11,026	11,026		-	
2018년	9,631	9,631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2
-----	--------	------------	-----	----------	----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P - 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명(추가인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32,420	30,500	25,500		5,000	△1,920	
국 비								
도 비		6,484	6,100	5,100		1,000	△384	
시 비		25,936	24,400	20,400		4,000	△1,536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중위소득 8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입원 또는 보장구 구입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생활 곤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저소득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지속 지원 필요
- 의료비, 보조기구 수요 증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도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0,000원*3명	= 45,000
		·500,000원*1명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2 : 12월 의료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교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 의료비 14건 · 보조기기 13건 (전동침대, 스마트패드 마운팅 시스템4, 기립훈련기, 이너 톨팅 휠체어, 전동바이크, 승마운동기구, 핸드컨트롤러,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보행차2)	최대 150만원
2017년	· 의료비 17건 · 보조기기 9건 (전동 샤워용데이블, 케네디컵, 휠체어용 우산거치대5, 휠체어악세사리 전동모듈 , 전동상하지운동기구)	최대 150만원
2018년	· 의료비 14건 · 보조기기 9건 (휠체어 액세서리3, 전동침대4, 전동보조동력장치, 카시트)	최대 150만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00,300	94,050		2,750	
2017년	156,020	155,980		40	
2018년	161,610	122,23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사회복지9급 황윤정	전화	2218
-----	--------	------------	-----	------------	----	------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이전] [P - 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9.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상담 및 교육·재활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535,000			△535,000		
국 비								
도 비								
시 비			535,000			△535,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하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복지관 내 장애아동의 언어, 인지치료 등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재활치료센터가 협소하여 확장이전하려 했으나, 장애인복지관 증축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확장 이전비 및 임대보증금 예산을 삭감하는 사안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재활치료센터 임대보증금	406-01 기타자본이전	·건물임대 보증금 50,000,000원*1개소 = △50,0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재활치료센터 확장 이전비	307-05 민간위탁금	·월 임대료 10,500,000원*10개월 ·중개수수료 5,000,000원*1회 ·건물 관리비 700,000원*10개월 ·설계비 18,000,000원*1식 ·재활치료실 설치공사비 30,000,000원*1식 ·이전비 50,000,000원*1회 = △48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 ~ 2018.12 : 2018년 4차 추경 시 삭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허윤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신	전화	2211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P - 6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400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305,800	509,700	346,316	128,384	35,000	203,900		
국 비		214,060	356,790	239,706	92,584	24,500	142,730		
도 비		45,870	76,455	53,305	17,900	5,250	30,585		
시 비		45,870	76,455	53,305	17,900	5,250	30,585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 11월 경기도 변경 내시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예산(예탁금) 증액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394가구 → 457가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아이돌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급 = 509,7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아이돌봄사업 지속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6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342가구)	
2017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394가구)	
2018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457가구(10월말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19,747	514,555	-	5,192	
2017년	305,800	305,800	-	0	
2018년	509,700	509,70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8급 심진호	전화	5605
-----	-------	-------------	-----	----------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P - 6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66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 한부모·미혼·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문화적인 생활 영위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745,100	833,450	746,970	0	86,480	88,350		
국 비		596,080	666,760	597,576	0	69,184	70,680		
도 비		74,510	83,345	74,697	0	8,648	8,835		
시 비		74,510	83,345	74,697	0	8,648	8,835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내용	<p>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신규□	계속■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 10월 경기도 변경 내시
- 아동양육비 지급 예산 증액 (아동양육비(만14세 미만) 지급 대상자 증가 : 5,591명 → 6,450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합계	= 833,450
		· 아동양육비 : 130,000원 * 525명 * 12개월	= 818,120
		· 추가아동양육비 : 50,000원 * 14명 * 12개월	= 8,400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55,000원 * 126명 * 1회	= 6,9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사업 지속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2016년	사업명	건수(명)	집행액
	합 계	4,970	510,550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4,556	489,300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46	7,85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268	13,400
2017년	사업명	건수(명)	집행액
	합 계	5,591	682,71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5,331	669,101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39	7,10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121	6,518
2018년	사업명	건수(명)	집행액
	합 계	6,450	821,75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6,235	810,541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03	5,15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112	6,05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93,850	510,550	-	83,300	
2017년	745,100	682,719	-	62,381	
2018년	833,450	821,750	-	11,7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장 박혜경	담당자	복지9급 박주연	전화	5608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합계 = 23,000	
		.전문가 모니터링 활동비 : 50,000원×235개소 = 11,750	
		.부모 모니터링 활동비 : 40,000원×235개소 = 9,400	
		.운영비 : 1,850,000원 = 1,8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4~2018.12 : 사업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모니터링단 운영 : 11명 (보육전문가 5명, 부모 5명, 컨설턴트 1명) 운영 및 활동비등 지원 : 145개소 방문 22,250천원 지원	
2017년	모니터링단 운영 : 11명 (보육전문가 5명, 부모 5명, 컨설턴트 1명) 운영 및 활동비등 지원 : 130개소 방문 18,800천원 지원	
2018년	모니터링단 운영 : 11명 (보육전문가 5명, 부모 5명, 컨설턴트 1명) 운영 및 활동비등 지원 : 235개소 방문 23,000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2,480	22,250	-	230	
2017년	21,600	18,800	-	2,800	
2018년	23,000	23,00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도팀장 박민수	담당자	사회복지9급 정병남	전화	5529
-----	-------	------------	-----	------------	----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P - 6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0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4,834,000	5,614,020	5,960,000	△324,000	△21,980	780,020	
국 비		2,417,000	2,807,010	2,980,000	△162,000	△10,990	390,010	
도 비		1,208,500	1,403,505	1,490,000	△ 81,000	△ 5,495	195,005	
시 비		1,208,500	1,403,505	1,490,000	△ 81,000	△ 5,495	195,005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9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하반기에 개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하여 잔액 조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계 ≙ 5,614,020													
		• 원장 30명 × 약 2,850천원× 12월 = 1,026,000													
		• 영아반 교사 125명 × 약 1,900천원× 12월 = 2,850,000													
		• 누리반 교사 120명 × 약 650천원× 12월 = 936,000													
		• 그 외 보육교직원 34명 × 약 1,965천원× 12월 = 801,720													
		○지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원장</th> <th colspan="2">담임교사</th> <th rowspan="2">취사부 (평가인증 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1명)</th> </tr> <tr> <th>영아반 (만0~2세)</th> <th>유아반 (만3~5세)</th> </tr> </thead> <tbody> <tr> <td>지원액</td> <td>보수월액 80%</td> <td>보수월액 80%</td> <td>보수월액 30%</td> <td>보수월액 100%</td> </tr> </tbody> </table>	구분	원장	담임교사		취사부 (평가인증 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1명)	영아반 (만0~2세)	유아반 (만3~5세)	지원액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30%	보수월액 100%	
구분	원장	담임교사			취사부 (평가인증 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1명)										
		영아반 (만0~2세)	유아반 (만3~5세)												
지원액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30%	보수월액 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2018년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지원(매월 25일 보조금 월 평균 447,972천원 지급)
- 2018.04~2018.12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지원
- 2018.10~2018.12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추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지원인원	175	69	244	
2017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지원인원	175	71	246	
2018년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지원인원	188	70	25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4,674,530	4,615,210	-	59,320	
2017년	4,834,000	4,833,945	-	55	
2018년	5,614,020	5,479,727	-	134,29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행정8급 김수지	전화	5590
-----	-------	------------	-----	----------	----	------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P - 6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7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아전담,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488,800	2,633,384	2,352,600	286,800	△6,016	144,584		
국 비		1,244,400	1,316,692	1,176,300	143,400	△3,008	72,292		
도 비		622,200	658,346	588,150	71,700	△1,504	36,146		
시 비		622,200	658,346	588,150	71,700	△1,504	36,146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9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시군간 균등지원을 위한 잔액조정)
- 취약보육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계 = 2,633,384					
		• 영아전담 7개소 × 약 13,000천원× 12월 = 1,092,000					
		• 장애아통합 4개소 × 약 2,100천원× 12월 = 100,800					
		• 장애아전문 1개소× 약 38,000천원× 12월 = 456,000					
		• 정부지원 시간연장교사 9명 × 약 1,820천원× 12월 = 196,560					
• 민간 시간연장교사 50명 × 약 1,313천원× 12월 = 787,800							
		○지원기준					
구분	원장	담임교사	시간연장교사	취사부			
		영아반	유아반	일급여형	수당형		
지원액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30%	정부지원 80%	민간 1,313천원	435천원	보수월액 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2018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 ▶ 영아전담·장애아통합·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매월 25일 보조금 월 평균 143,365천원 지급
 - ▶ 시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매월 7일 보조금 월 평균 70,151천원 지급
- 2018.07~2018.12 : 신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개소 추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사업명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22	45	16	4	57	
2017년	사업명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24	47	17	4	56	
2018년	사업명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28	48	18	5	5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2,209,672	2,208,569	-	1,103	
2017년	2,488,800	2,426,460	-	62,340	
2018년	2,633,384	2,573,158	-	60,226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행정7급 김경래 행정8급 김수지	전화	5589 5590
-----	-------	------------	-----	----------------------	----	--------------

[보조교사 인건비] (P - 6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9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1,744,400	2,541,687	2,288,000	312,631	△58,944	797,287	
국 비		872,200	1,270,843	1,144,000	156,315	△29,422	398,643	
도 비		436,100	635,422	572,000	78,158	△14,761	199,322	
시 비		436,100	635,422	572,000	78,158	△14,761	199,322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
- 보조교사 채용 시 구인기간 등 공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합 계 ≙ 2,541,687	
		○ 832,000 × 221명 × 12개월(당초) = 2,206,464	
		○ 832,000 × 78명 × 6개월(추가) = 389,376	
		○ 지원대상 ▶ 영아반 보조교사 :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 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월 832천원/1인(1일 4시간 근무)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3.05. : 2018년 영아반 보조교사 1차 선정
- 2018.05.16. : 2018년 영아반 보조교사 및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 추가 선정
- 2018.07.09. : 2018년 영아반 보조교사 2차 선정
- 2018.01.~2018.12.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월 평균 182,773천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월 평균 100명, 784천원/인	
2017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월 평균 200명, 811천원/인	
2018년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월 평균 270명, 832천원/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978,432	900,433	-	77,999	
2017년	1,744,400	1,491,620	-	252,780	
2018년	2,541,687	2,010,498	-	281,189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행정7급 김경래	전화	5589
-----	-------	------------	-----	----------	----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P - 6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48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640,000	602,343	602,800	0	△37,657		
국 비		320,000	301,171	301,400	0	△18,829		
도 비		160,000	150,586	150,700	0	△9,414		
시 비		160,000	150,586	150,700	0	△9,414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시군간 균등지원을 위한 잔액조정)
-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 하여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천원 × 482명 × 12개월 = 602,343 지원대상 :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월 평균 48,851천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450	
2017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371	
2018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39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27,458	523,160	-	4,298	
2017년	640,000	630,960	-	9,040	
2018년	602,343	587,730	-	14,61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P - 6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여 우수한 공보육서비스 제공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03,300	104,300	103,300	△2,500	3,500	1,000		
국 비									
도 비		20,660	20,860	20,660	△500	700	200		
시 비		82,640	83,440	82,640	△2,000	2,800	8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9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12월분 집행액 부족으로 인한 증액)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합계 = 104,300			
		• 40인 미만 : 600천원 × 7개소 × 12월 = 50,400			
		• 40인 이상 : 900천원 × 5개소 × 12월 = 54,000			
		○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고
		월 지원액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2018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매월 25일 보조금 월 평균 8,445천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7개소×12월 2개소×6월	7월 공공형어린이집 신 규선정으로 9개소에서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2개소×12월	11개소로 증가	
2017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11개소×12월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2개소×12월		
2018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12개소×1월 11개소×1월 10개소×8월	대표자 변경 등에 의해 2개소 지정 취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2개소×10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86,400	79,200	-	7,200	
2017년	103,300	103,300	-	0	
2018년	104,300	104,30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행정8급 김수지	전화	5590
-----	-------	------------	-----	----------	----	------

[누리과정 운영] [P - 6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4,53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4,579,341	15,765,000	14,865,000	0	900,000	1,185,659		
국 비									
도 비		14,579,341	15,765,000	14,865,000	0	900,000	1,185,659		
시 비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량 4,272명 → 4,530명으로 증가)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보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누리과정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계	≒ 15,765,000
		• 처우개선비 : 300천원 × 340명 × 12월	= 1,224,000
		• 운영비 : 1,650천원 × 130개소 × 12월	= 2,574,000
		• 보육료 : 220천원 × 4,530명 × 12월	= 11,959,200
○ 지원대상 : 만3~5세 아동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 지원종류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 월 220 ~ 30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 매월 처우개선비 지원액을 제한잔액을 이동 수로 균분하여 지원 · 누리과정 보육료 : 월 220천원 지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2018년 누리과정 운영 지원
 - ▶ 누리과정 보육료 매월 말일 평균 1,000,000천원 예약
 -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매월 25일 평균 97,400천원 지원
 - ▶ 누리과정 운영비 매월 평균 217,460천원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계		4,722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0천원/인	4,411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신청아동기준 경기도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00천원/인		
2017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계		4,593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0천원/인	4,286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신청아동기준 경기도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00천원/인		
2018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계		4,951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0천원/인	4,635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신청아동기준 경기도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00천원/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중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5,129,944	15,113,419	-	16,524	
2017년	15,032,000	14,876,916	-	155,083	
2018년	15,765,000	15,765,00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행정8급 김수지 사회복지9급 김형규	전화	5590 5606
-----	-------	------------	-----	------------------------	----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P - 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1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284,400	516,480	277,200	217,800	21,480	232,080	
국 비								
도 비		56,880	103,296	55,440	43,560	4,296	46,416	
시 비		227,520	413,184	221,760	174,240	17,184	185,664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 제1항 제13호
근거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1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
- 민간어린이집 월 50천원 → 월 100천원, 가정·협동 그 외 어린이집 월 100천원 → 150천원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아의 발달과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협동 어린이집 150천원 × 200개소 그 외 어린이집 100천원 × 117개소 ≙ 516,480	
		지원대상 : 평가인증 어린이집 가정·협동 어린이집 : 월 150천원/개소 그 외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 월 100천원/개소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2018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매월 7일 월 평균 40,500천원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2017년 신규사업
	총계		2,876	
	민간 어린이집	월5만원/개소	812	
	가정·협동어린이집	월 10만원/개소	2,064	
2018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총계		2,586	
	민간 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686	
	가정·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개소	1,9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7년	284,400	262,700	-	21,700	2017년 신규사업
2018년	516,480	502,450	-	14,03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P - 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9,04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16,035,000	16,221,000	16,330,000	0	△109,000	186,000		
국 비		10,422,750	10,543,650	10,614,500	0	△70,850	120,900		
도 비		2,806,125	2,838,675	2,857,750	0	△19,075	32,550		
시 비		2,806,125	2,838,675	2,857,750	0	△19,075	32,55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근거내용	제34조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2018년 11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비하여 시설(유치원, 어린이집)이용 아동들의 증가로 인한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월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0,000 × 3,475명 × 12개월 • 150,000 × 2,800명 × 12개월 • 200,000 × 2,768명 × 12개월 <p style="text-align: right;">= 16,221,000</p>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아동 지원종류 :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가정 양육수당 지원(월 평균 1,327,064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0~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100천원		
	36~47		129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99,536	33	240	99,809		
2017년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0~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100천원		
	36~47		129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99,435	24	221	99,680		
2018년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0~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100천원		
	36~47		129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86,355	18	234	86,60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16,300,000	16,231,856	-	68,144	
2017년	16,035,000	15,998,256	-	36,744	
2018년	16,221,000	16,191,000	-	30,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복지9급 김형규	전화	5606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P - 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8,34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47,830,000	56,092,200	45,628,000	1,842,000	8,622,200	8,262,200		
국 비		31,089,500	36,459,930	29,658,200	1,197,300	5,604,430	5,370,430		
도 비		8,370,250	9,816,135	7,984,900	322,350	1,508,885	1,445,885		
시 비		8,370,250	9,816,135	7,984,900	322,350	1,508,885	1,445,885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량 7,062명 → 사업량 8,345명으로 증가)
-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영유아의 보육기회 확대를 위한 보육료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계	≒ 56,092,2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0세 : 878천원 × 1,000명 × 12월 = 10,563,000 만1세 : 626천원 × 1,775명 × 12월 = 13,333,800 만2세 : 482천원 × 5,570명 × 12월 = 56,086,680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만0~2세 아동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령</th> <th colspan="2">종일형</th> <th colspan="3">맞춤형</th> </tr> <tr> <th>부모보육료</th> <th>기본보육료</th> <th>부모보육료</th> <th>기본보육료</th> <th>간접보육비우치</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td> <td>441,000</td> <td>437,000</td> <td>344,000</td> <td>437,000</td> <td>60,000</td> </tr> <tr> <td>만1세</td> <td>388,000</td> <td>238,000</td> <td>302,000</td> <td>238,000</td> <td>60,000</td> </tr> <tr> <td>만2세</td> <td>321,000</td> <td>161,000</td> <td>250,000</td> <td>161,000</td> <td>60,000</td> </tr> </tbody> </table>	연령	종일형		맞춤형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접보육비우치	만0세	441,000	437,000	344,000	437,000	60,000	만1세	388,000	238,000	302,000	238,000	60,000	만2세	321,000	161,000	250,000	161,000	60,000	
연령	종일형			맞춤형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접보육비우치																											
만0세	441,000	437,000	344,000	437,000	60,000																											
만1세	388,000	238,000	302,000	238,000	60,000																											
만2세	321,000	161,000	250,000	161,000	60,000																											
		※2018년 영유아보육료 기준, 2019년 변동 가능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2018.12 : 2018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 영유아보육료 매월 말일 월 평균 3,500,000천원 예탁
 - ▶ 기본보육료 매월 말일 월 평균 1,700,000천원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종일 430천원 맞춤 344천원	378천원 302천원	313천원 250천원	8,495명/월	372천원	180천원	118천원	6,358명/월	
2017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종일 430천원 맞춤 344천원	378천원 302천원	313천원 250천원	10,400명/월	395천원	191천원	125천원	6,704명/월	
2018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종일 441천원 맞춤 344천원	388천원 302천원	321천원 250천원	11,726명/월	437천원	238천원	161천원	7,909명/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42,891,800	42,891,800	-	0	
2017년	47,830,000	47,830,000	-	0	
2018년	56,092,200	56,092,200	-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박명희	담당자	행정8급 김수지	전화	5590
-----	-------	------------	-----	----------	----	------

[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P - 6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출산 극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660,000	770,000		660,000	110,000	110,000		
국 비		330,000	385,000		330,000	55,000	55,000		
도 비		165,000	192,500		165,000	27,500	27,500		
시 비		165,000	192,500		165,000	27,500	27,5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근거내용	<p>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국공립어린이집(1개소) 리모델링 지원
- 2018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변경 내시 반영
- ※ 사업대상

연번	공동주택명(세대수)	위치	면적(m ²)	입주일	비고
1	에일린의뜰(439세대)	운양동	217	'17.12.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확충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110,000,000원 × 1개소 = 110,000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추진계획

○ 2019년 :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1개소						
	연번	어린이집 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호수	구래동	70명	2016.02.15.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 예산 확보('17년 3회 추경) - 시립양촌어린이집 외 5개소 : 660,000,000원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6개소 (2017년 이월사업비로 추진)						
	연번	어린이집 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양촌	양촌읍	42명	2018.04.02.		
	2	시립구래	구래동	88명	2018.07.01.		
	3	시립아이파크	구래동	68명	2018.09.28.		
	4	시립푸르지오아이	구래동	71명	2018.10.01.		
	5	시립e-꿈찬	마산동	69명	2018.10.01.		
	6	시립유보라-i	구래동	47명	2018.10.0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 예산 확보('18년 3회추경) - 풍무푸르지오2차어린이집(풍무동) 외 5개소 : 660,0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50,000	50,000	-	0	
2017년	660,000	4,032	655,968	0	이월액 중 625,968천원 2018년 집행
2018년	770,000	29,928	740,072	0	2019년으로 명시이월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도팀장 박민수	담당자	복지7급 이애스더	전화	5586
-----	-------	------------	-----	-----------	----	------

[어린이집 확충(기자재비 지원)] (P - 6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출산 극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60,000	70,000		60,000	10,000	10,000		
국 비		30,000	35,000		30,000	5,000	5,000		
도 비		15,000	17,500		15,000	2,500	2,500		
시 비		15,000	17,500		15,000	2,500	2,5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근거내용	<p>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4.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5. 보육교사 인건비 6. 교재·교구비</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국공립어린이집(1개소) 기자재비 지원
- 2018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변경 내시 반영
- ※ 사업대상

연번	공동주택명(세대수)	위치	면적(m ²)	입주일	비고
1	에일린의뜰(439세대)	운양동	217	'17.12.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시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 -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0,000원 × 1개소 = 10,000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추진계획

○ 2019년 :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1개소						
	연번	어린이집 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호수	구래동	70명	2016.02.15.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 예산 확보('17년 3회 추경) - 시립양촌어린이집 외 5개소 : 60,000,000원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6개소 (2017년 이월사업비로 추진)						
	연번	어린이집 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양촌	양촌읍	42명	2018.04.02.		
	2	시립구래	구래동	88명	2018.07.01.		
	3	시립아이파크	구래동	68명	2018.09.28.		
	4	시립푸르지오아이	구래동	71명	2018.10.01.		
	5	시립e-꿈찬	마산동	69명	2018.10.01.		
6	시립유보라-이	구래동	47명	2018.10.0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 예산 확보('18년 3회추경) - 풍무푸르지오2차어린이집(풍무동) 외 5개소 : 60,0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6년	30,000	30,000	-	0	
2017년	60,000	-	60,000	0	이월액 60,000천원 2018년 집행
2018년	70,000	-	70,000	0	2019년으로 명시이월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도팀장 박민수	담당자	복지7급 이예스더	전화	5586
-----	-------	------------	-----	-----------	----	------

[어린이집 기능보강(기자재비 지원)] (P - 6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출산 극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10,000	270,000		240,000	30,000	6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10,000	270,000		240,000	30,000	60,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근거내용	<p>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7.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8. 보육교사 인건비 9. 교재·교구비</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input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6년 대비 기자재 구입비 지원 단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시비 추가 지원
- 기자재 중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편성
- ※ 사업대상

연번	공동주택명(세대수)	위치	면적(m ²)	입주일	비고
1	에일린의뜰(439세대)	운양동	217	'17.12.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기자재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합계 = 30,000	
		-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5,000,000원 × 1개소 = 5,000	사무용품 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5,000,000원 × 1개소 = 25,000	교재교구 보육용가구 가전제품 등
* 면적 기준 : 300㎡ 미만 30,000천원 / 300㎡ ~ 500㎡ 40,000천원 / 500㎡ 초과 50,000천원			

□ **사업추진계획**

- 2019년 :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 예산 확보('17년 3회 추경) - 시립양촌어린이집 외 5개소 : 210,000,000원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6개소 (2017년 이월사업비로 추진)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어린이집 명</th> <th>행정동</th> <th>정원</th> <th>개원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시립양촌</td> <td>양촌읍</td> <td>42명</td> <td>2018.04.02.</td> <td></td> </tr> <tr> <td>2</td> <td>시립구래</td> <td>구래동</td> <td>88명</td> <td>2018.07.01.</td> <td></td> </tr> <tr> <td>3</td> <td>시립아이파크</td> <td>구래동</td> <td>68명</td> <td>2018.09.28.</td> <td></td> </tr> <tr> <td>4</td> <td>시립푸르지오아이</td> <td>구래동</td> <td>71명</td> <td>2018.10.01.</td> <td></td> </tr> <tr> <td>5</td> <td>시립e-꿈찬</td> <td>마산동</td> <td>69명</td> <td>2018.10.01.</td> <td></td> </tr> <tr> <td>6</td> <td>시립유보라-i</td> <td>구래동</td> <td>47명</td> <td>2018.10.08.</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어린이집 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양촌	양촌읍	42명	2018.04.02.		2	시립구래	구래동	88명	2018.07.01.		3	시립아이파크	구래동	68명	2018.09.28.		4	시립푸르지오아이	구래동	71명	2018.10.01.		5	시립e-꿈찬	마산동	69명	2018.10.01.		6	시립유보라-i	구래동	47명	2018.10.08.		
	연번	어린이집 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양촌	양촌읍	42명	2018.04.02.																																							
	2	시립구래	구래동	88명	2018.07.01.																																							
	3	시립아이파크	구래동	68명	2018.09.28.																																							
	4	시립푸르지오아이	구래동	71명	2018.10.01.																																							
5	시립e-꿈찬	마산동	69명	2018.10.01.																																								
6	시립유보라-i	구래동	47명	2018.10.0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 예산 확보('18년 3회추경)																																												
- 풍무푸르지오2차어린이집(풍무동) 외 5개소 : 240,0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7년	210,000	-	210,000	0	이월액 210,000천원 2018년 집행
2018년	270,000	-	270,000	0	2019년으로 명시이월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도팀장 박민수	담당자	복지7급 이애스더	전화	5586
-----	-------	------------	-----	-----------	----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P - 6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규모 : 1,58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4,360,000	4,047,000	3,596,000	0	451,000	△313,000		
국 비		2,180,000	2,023,500	1,798,000	0	225,500	△156,500		
도 비		1,090,000	1,011,750	899,000	0	112,750	△78,250		
시 비		1,090,000	1,011,750	899,000	0	112,750	△78,25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7.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1,407명→1,583명)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지원을 통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교사 겸직 원장] (P - 6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7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사 겸직 원장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226,000	246,931	227,800	0	19,131	20,931		
국 비		113,000	123,465	113,900	0	9,565	10,465		
도 비		56,500	61,733	56,950	0	4,783	5,233		
시 비		56,500	61,733	56,950	0	4,783	5,233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10월 경기도 변경내시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252명→273명)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산] (P - 6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0월 ~ 12월
- 사업규모 : 다문화이주민+센터 1개소 설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육·상담·통역, 체류허가·고용허가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형 센터 설치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7년 예산 대비 증감 (B-A)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계	100,000		100,000			1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		100,000			100,000		특별교부세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근거내용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에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확산	401-01 시설비	합계	= 100,000
		· 공사 설계 용역비	= 7,542
		· 리모델링 공사비 : 92,458,000원*1개소	= 92,45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8급 심진호	전화	5605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체육과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8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9,000,000	0	3,700,000	200,000	3,000,000	500,000	5,30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200,000			0	
	보상비		0					
	공사비	8,650,000		3,500,000	3,000,000	500,000	5,150,000	
	감리비	150,000		0			150,000	
	부대비			0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공유재산심의
- 2017. 11.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 02. 실시설계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 2018. 05. 공유재산(변경)심의
- 2018. 12. 공사착공
- 2020. 06.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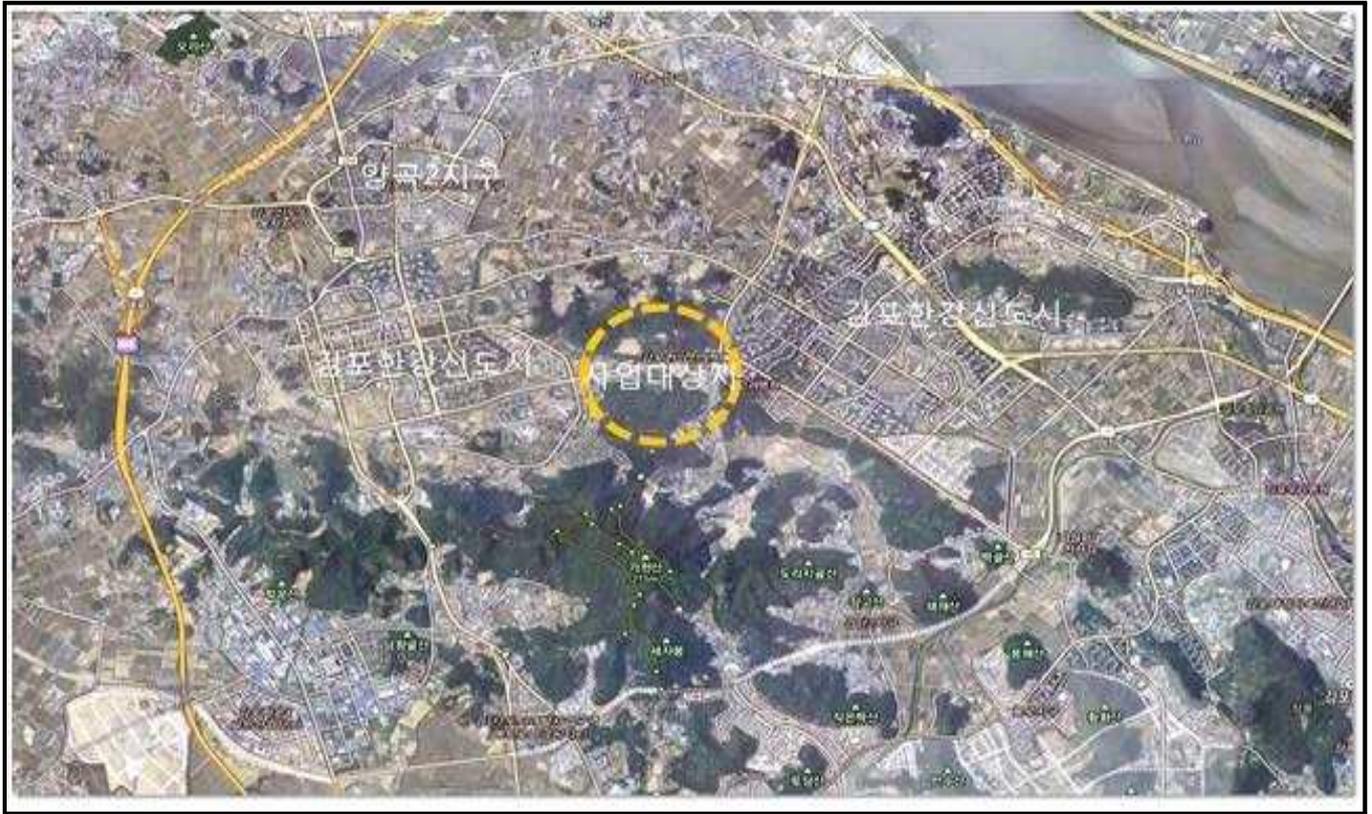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솔터축구장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우진건축사사무소, 금185,99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8년	3,200,000	1,985,996	1,214,004	0	

□ 위치도



□ 정비계획(안)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P - 6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02. ~ 2019.12. ○ 위 치 : 통진읍 검암2로 49(서암리)
- 사업규모 : 체육공원 조성 48,181㎡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북부권지역 체육공원 조성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 제공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2017년 예산액(까지) (A)	2018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E-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8,600,000	5,181,000	400,000	0	0	400,000	3,019,00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8,600,000	5,181,000	400,000			400,000		특별교부세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원안추진	원안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년	2018.11월	2018.05월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시정만족도 증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400,000
서암생활 체육공원	401-01 시설비	.기타공사(조경, 토목 등 : 1식)	= 1,369,000 중 400,000소요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8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3회 추경 (D)	4회 추경 요구액(E)		
계	8,600,000	5,181,000	400,000	0	0	400,000	3,019,000	
공 정 별	설계비	173,000	173,000	0				
	보상비	5,008,000	5,008,000	0				
	공사비	3,419,000		400,000		0	400,000	3,019,000
	감리비			0				
	부대비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03. 공유재산심의
- 2017. 12. 실시설계 보완용역
- 2018. 05. 공유재산(변경)심의
- 2019. 03. 공사착공
- 2019. 12.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토지 9필지 협의보상 23,016㎡, 금1,910,340천원 - 보완설계용역 착수(동산이엔씨, 40,183천원)	
2018년	- 토지 8필지 협의보상 13,805㎡, 금1,030,937천원 - 보완설계용역 준공(동산이엔씨, 40,183천원) -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법원공탁(1필지, 885㎡, 50,1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7년	3,131,000	1,920,650	1,210,350	-	
2018년	1,210,350	1,123,518	86,832	-	

□ 위치도



□ 조성계획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2018년도 제4회 추경
사업설명서

시립도서관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201-03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비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1~2018.12 :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수강생 모집(저자강연, 독서지도 등)
- 2019.01~2019.04 : 세부 프로그램 진행
- 2019.05: 프로그램 진행 및 결과 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시립도서관	고촌풍무도서관팀장 김현숙	담당자	사서9급 이아영	전화	2187
-----	-------	---------------	-----	----------	----	------